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발의의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3년 4월 13일

3. 개정이유

- 개관일, 입장료, 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교육프로그램 운영, 교육비 납부·감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,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휴관일 개관(안 제3조제1항)
 -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도 개관
-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 확대(안 제4조)
 - (면제)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,
임신부 및 그 동반자 1명
 - (할인) 충청권 4개 시·도민
문의면 지역 상가, 식당, 숙박시설 이용자

- 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 대상 추가(안 제7조)
 - 교육시설(강의실, 체험실, 생활관, 그 밖의 부대시설)
- 교육프로그램의 운영, 교육비 납부 및 감면 등 규정 신설(안 제15조, 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휴관일, 입장료 면제 및 할인, 시설·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 대상 추가,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

주요 내용은 첫째, 안제3조에 휴관일도 개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,

둘째, 안 제4조의 입장료 면제 대상에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, 임산부 및 그 동반자 1명을 추가하고,

셋째, 안 제4조의 입장료 할인 대상에 충청권 4개 시·도민, 문의면 지역상가, 식당, 숙박시설 이용자를 추가하고,

넷째, 안제7조에 교육시설의 설치 및 사용허가를 신설하고,

다섯째, 프로그램의 운영, 교육비 납부 및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

본 조례안은 「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」 기공에 따라 청남대에 교육관 및 생활관이 신축될 예정이며,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

및 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,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관일 개관에 대한 규정과 입장료 면제 및 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